



## 글로벌현장학습운영규정

제정일	2016. 7. 1
개정일	2022. 5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국제협력센터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학칙 제22조 ⑤에 규정된 전문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 및 해외현장실습 등(이하 “글로벌현장학습” 이라 한다)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 운영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편성 및 학점인정) ① 글로벌현장학습은 16주 이상 협약업체에서 실습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, 2년제는 2학년, 3년제는 3학년의 해당 학기에 편성된 전공과목으로 2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. (개정 2022. 5. 1)
- ② 글로벌현장학습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비대면(온라인)현장학습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  
[전문개정 2021. 5. 1]
- 제 3조 (교육과정 이수)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편성된 전공과목에 한한다.  
② 이수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으로 최대 20학점으로 제한한다. (개정 2022. 5. 1)  
③ 수강신청 한 과목의 평가는 학부(과)별 글로벌현장학습 소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성적을 부여한다.
- 제 4조 (실습기관의 선정 및 협약) ① 글로벌현장학습 실습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1. 글로벌현장학습 실습기관 선정은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있거나 해외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(교육기관)를 선정한다.  
2.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파견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 
② 글로벌현장학습 파견기관과의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상황에 따라 해외 현장실습 주관부서장과 해외현장실습 기관의 주관(담당) 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.
- 제 5조 (대상자 및 자격)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학생으로 해당국가의 언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 한다.  
② 글로벌현장학습 실시 이전학기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. 열린전형의 경우 평점이 3.0 미만인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5. 1)  
③ 글로벌현장학습의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최종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.
- 제 6조 (지원신청서 제출) 글로벌현장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본교에서 정한 기간에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7조 (대상자 선발) 글로벌현장학습 참여대상자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본교와 기관이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연수분야와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현장학습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. 단, 재학생의 일정비율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.
- 제 8조 (학생지도) ① 학생지도는 해당학부(과) 지도교수가 담당하며, 지도교수 및 담당자는 여건이 되는 한 글로벌현장학습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및 학생의 활동현황 등을 점검하고, 보고서의

작성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며 학생과 현장실습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② 직접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산망이나 네트워크, 문서 등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다.

③ 글로벌현장학습 지도교수는 기관 방문 후,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글로벌현장학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멘토링 위원을 선임하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.

제 9조 (성적평가 및 이수인정) ① 글로벌현장학습에 대한 성적평가는 연수생의 출근부, 주간보고서, 종합결과보고서, 기관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각 학부(과) 소위원회에서 성적을 평가·부여하고, 글로벌현장학습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성적평가에 대한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한다.

② 글로벌현장학습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성적은 상기 ①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0조 (학생의 의무) 글로벌현장학습의 참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체류국가의 법규, 문화를 준수하며,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2. 글로벌현장실습에 관련된 서류는 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부(과)에 제출해야 한다.

3. 현장실습 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4. 글로벌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
5. 글로벌현장실습과정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부(과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
제11조 (학생 의무 위반자 조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,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글로벌현장실습 중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
2. 고의적으로 교육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
3. 고의적으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
4.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2조 (글로벌현장학습 평가심의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국제협력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글로벌현장학습 참여 학생 심사 및 선발

2. 글로벌현장학습 학생 의무 위반자 조치

3. 글로벌현장학습 학생성적평가에 대한 심의

4. 기타 글로벌현장학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의 개최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 (준용) 글로벌현장실습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.

제14조 (주관부서)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무는 국제협력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15조 (기타) ① 글로벌현장학습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.

② 글로벌현장학습 참가자는 해외 현장실습 수료 후 3년간 갱신정보 제공(취업처, 취업정보

현황)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
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(삭제 2022. 5. 1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<b>글로벌 현장학습 종합결과보고서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

학생현황	학 생 명			
	학 교 명		학부(과)명	

기업현황	기 업 명		근무부서	
	연수담당자 (인사담당자)			
	인 턴 십 실시기간			

참여목적 및 필요성				
---------------	--	--	--	--

현 장 업 무 수행의 결과				
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

향후 진로 계획 (취업결과)				
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

확 인	(참가기업)대표이사			(인)
	학 교 담 당 자			(인)

【별지 제3호 서식】(삭제 2022. 5. 1)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### 글로벌 현장학습 출근부(       월)

근 무 자	학부(과)명		성 명		(인)
근무현황	기 업 명		근무기간		
	근무내용				

일 자 (요일)	/ (월)	/ (화)	/ (수)	/ (목)	/ (금)	/ (토)	/ (일)
서 명							
일 자 (요일)	/ (월)	/ (화)	/ (수)	/ (목)	/ (금)	/ (토)	/ (일)
서 명							
일 자 (요일)	/ (월)	/ (화)	/ (수)	/ (목)	/ (금)	/ (토)	/ (일)
서 명							
일 자 (요일)	/ (월)	/ (화)	/ (수)	/ (목)	/ (금)	/ (토)	/ (일)
서 명							
일 자 (요일)	/ (월)	/ (화)	/ (수)	/ (목)	/ (금)	/ (토)	/ (일)
서 명							

※ 연수생이 작성(서명)하고 확인은 기업대표와 학교담당자가 수행. 결근, 휴가, 병가 등의 경우 [서명]란에 기재

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.

년    월    일

확 인	(참가기업)대표이사		(인)
	학교담당자		(인)

【별지 제5호 서식】(개정 2022. 5. 1)

**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주간보고서 [     ] 주차**  
**Glob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Weekly Report**

대학명		전 공	
성 명		학년/학번	
국 가		기 관	
기 간	20××.×.×. ~ 20××.×.×. (1주차)		

날짜/요일	활동 내용 (Detailed Activities)
9/0 (Mon)	<한글> <외국어>
9/0 (Tue)	<한글> <외국어>
9/0 (Wed)	<한글> <외국어>
9/0 (Thu)	<한글> <외국어>
9/0 (Fri)	<한글> <외국어>
9/0 (Sat)	<한글> <외국어>
9/0 (Sun)	<한글> <외국어>

기타/사진	
-------	--

## 글로벌현장학습 이수 증명서

1. 학(부)과 :
2. 학 번 :
3. 성 명 :
4. 생년월일 :
5. 주관기관 :
6. 실습기관 : 20   학년도 제   학기
7. 파견국가 :
8. 실습기관 :
9. 실습직무 :

상기 학생은 위와 같이 글로벌현장학습 과정을 이수함.

년   월   일

동서울대학교총장 □□□(인)

【별지 제7호 서식】

## 글로벌현장학습 학점인정 신청서

소 속 :            대학교            학부(과)  
학 번 :  
성 명 :  
연수국가 및 기관 :  
인정학기 : 20   학년도    제    학기

상기 학생의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번	과목명	학점	성적				평가등급	
			연수기관		담당교수			계
			어학 연수	산업체 연수	멘토링	보고서		
			10점	20점	20점	50점	100점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	계							

년    월    일

지도교수 : \_\_\_\_\_ (인)

학부(과)장 : \_\_\_\_\_ (인)

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



【별지 제8호 서식】

글로벌현장학습 학과 소위원회 회의록								
일 시	2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				
장 소								
참석자	김00	이00	박00	000	000			
회의내용	<p>※첨부서류 : 글로벌현장학습 학점인정 신청서. 1부.</p>							
							학부(과)장	(인)